해지합의서

**제1조 (목적)**

본 해지합의서는 주식회사 케이티(이하 '케이티'라 한다)와 ( ) (이하 '□□□'라 한다) 간에 체결한 계약을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해지하고, 원만히 계약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(해지대상 계약)**

본 해지합의서로 인하여 해지되는 계약(이하 '원계약'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

2.

3.

**제3조 (합의 내용)**

① '케이티'와 '□□□'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계약에 따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할 권리∙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.

1.

2.

3.

② '케이티'와 '□□□'는 원계약 기간 중 또는 해지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본 해지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며, 원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, 위약금, 기타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권리주장 등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.

**제4조 (개인정보의 파기)**

① '□□□'는 원계약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'케이티' 고객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본 해지합의서 체결일로부터 ( )일 이내에 '케이티'에게 반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파기하여야 한다.

1.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: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
2. 제1호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: 파쇄 또는 소각

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'□□□'는 케이티의 요청에 따라 그 파기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청일로부터 ( )일 내에 '케이티'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'□□□'가 본 조를 위반하여 '케이티'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한 경우 '□□□'는 '케이티' 및 고객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**제5조 (비밀유지)**

① '케이티'와 '□□□'는 본 해지합의서의 내용, 체결 여부 및 관련 협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며,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∙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'케이티'와 '□□□'는 원계약이 본 해지합의서로 인해 해지된 후에도 원계약및 원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상, 업무 및 영업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∙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6조 (손해배상)**

양 당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관할)**

본 해지합의서와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.

**제8조 (효력)**

본 해지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'케이티'와 '□□□'은 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의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[ ]. [ ]. [ ].

|  |  |
| --- | --- |
| 주식회사 케이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(정자동 206)  대표이사 ㅇㅇㅇ (인) | (법인명)  (주소)  대표이사 (인) |